

구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3. 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과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규정(안 제4조)
- 다.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규정(안 제6조 및 제7조)
- 라.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(안 제8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, 제3조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
구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미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실질적으로 지원·관리하는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착한가격업소”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, 이·미용업,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가격·품질·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지정 및 취소)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행정안전부의 「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」(이하 “지정기준”이라 한다)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.

제5조(운영현황 점검)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

하여야 한다.

제6조(이용 활성화)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원)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
2.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
3.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보조
4.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
5.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
6.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
7.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물가모니터요원 운영 및 임무)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.

1.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
2. 착한가격업소 점검
3. 지역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
4.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9조(영업자의 협조)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, 관계 공무원 및 물가모니터요원 등의 현지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0조(포상)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「구미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.

관계법령

□ 「소상공인기본법」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 다만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·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
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구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「구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정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지원 필요(안 제7조)
-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을 위한 수당 지급에 따른 세출 발생(안 제8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1.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

3. 미첨부 사유

- 구미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및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수당 지급 등의 비용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
-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내 용	금 액	산출내역
합 계	99,628	
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	75,000	▶ 개소당 연간 1,500천원 규모
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수당	24,628	▶ 기본 : 76,960원×8명×3회×12월 ▶ 설,추석 : 76,960원×8명×2회×2일

4. 작성자

-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이다정(054-480-2624)

소 관 부 서		일자리경제과
입 안 자	과 장	서 성 교
	담 당	박 병 호
	담 당 자	이 다 정 (480-2624)